

제정 1970년 3월1일

개정 1975년 4월 26일, 1975년 7월 5일, 1979년 7월 8일, 1981년 3월 1일, 1984년 3월1일, 1986년 3월 1일, 1987년 9월 30일, 1988년 3월 1일, 1988년 3월 9일, 1988년 9월 21일, 1993년 3월 31일, 1993년 8월 5일, 1994년 8월 30일, 1996년 9월 1일, 1997년 3월 1일, 1998년 3월 1일, 1999년 9월 1일, 2001년 9월 1일, 2003년 5월 1일, 2003년 9월 1일, 2004년 3월 1일, 2004년 6월 10일, 2004년 7월 22일, 2004년 10월 7일, 2005년 3월 1일, 2005년 9월 1일, 2006년 3월 1일, 2006년 11월 1일, 2007년 9월 1일, 2007년 11월 10일, 2008년 3월 1일, 2008년 9월 20일, 2008년 12월 20일, 2009년 3월 1일, 2009년 8월 7일, 2010년 2월 22일, 2010년 4월 14일, 2011년 4월 27일, 2011년 5월 1일, 2012년 2월 20일, 2012년 4월 26일, 2012년 6월 4일, 2012년 7월 1일, 2013년 3월 1일

전문개정 2013년 7월 25일

개정 2013년 8월 27일, 2014년 3월 1일, 2014년 3월 12일, 2014년 6월 17일, 2015년 5월 7일, 2015년 5월 22일, 2015년 11월 16일

총신대학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교육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개혁주의적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학문의 이론과 그 실천방법을 연구, 교수함과 동시에 신앙인격의 도야를 통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석사과정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은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② 연구과정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가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여 연구하는 과정으로서 학위는 수여하지 아니하는 과정을 말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이라 함은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편 제

제1절 조 직

제3조(교육조직) ① 본 대학교에 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선교대학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을 둔다.(2013.12.2)

② 대학에는 신학과, 교회음악과(이상 신학부), 기독교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유아교육과, 교양교직과(이상 사범학부),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중독재활상담학과(이상 사회과학학부) 및 성인학습자를 위한 사회교육대학을 둔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산업교육학부”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산업교육학부에는 유아보육학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다문화한국어학과를 두고,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을 둔다. 산업교육학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2013.12.2)

④ 각 학과(전공)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지도교수를 둔다.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학칙 및 학사내규에 의하여 학과의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연구과제 지정 등 기타 수학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대학의 학과(전공) 설치와 폐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 대학원의 설치와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4조(과정) ① 대학에 학사과정을 둔다.

② 일반대학원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두며, 박사후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④ 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둔다.

⑤ 전공별로 대학원에 최고위과정등을 둘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를 두고, 각 기관과 연구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도서관
2. 영적지도자훈련원
3. 교육방송국

4. 총신대보사 / 원보사
5. 출판부
6. 생활관
7. 기독교 교육연구소
8. 성지언어연구소
9. 교회선교연구소
10. 교회음악연구소
11. 개혁신학연구센터
12. 교수학습지원센터
13. 학생취업지원센터
14. 장애학생지원센터
15. 사회봉사센터
16. 성인학습지원센터
17. 문소기독교박물관
18. 어학원
19. 중독재활상담연구소
20. 다문화연구소

② 부설교육기관으로 부속유치원, 평생교육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 인정시설), 원격평생교육원을 두며, 운영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6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입학정원) ① 본 대학교의 대학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대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북한이탈주민

③ 산업교육학부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④ 각 대학원에 설치되는 학과(전공)와 학위수여 종별 및 입학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⑤ 각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4 2-0-1 대학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북한이탈주민
5.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6. 학·군 제휴협약에 의한 군 위탁생으로 추천받은 자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조5항’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

제2절 교직원

제8조(교직원의 구분) ① 본교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두고,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사운영 및 행정을 위해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둔다.

제9조(교원의 임용 등) 교원의 임용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입학, 수업, 졸업

제1절 학사운영기간

제10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6학기 또는 7학기 동안에 졸업소요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성적 평균이 3.85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신학대학원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사내규에 따른다.

제11조(재학연한) ① 본 대학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하되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로 한다.

② 재학연한 내에 본 대학교 졸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3조(학기) 학년은 2개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무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5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국법정공휴일, 주일, 개교기념일(5월 15일), 하계방학, 동계방학으로 한다.

② 방학기간과 임시휴업일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2절 입학 및 등록

제16조(입학시기)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자격) ①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국내·외에서 12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의 각 호 해당자와 동일한 자격이 인정된 자

②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6 2-0-1 대학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3. 위의 1,2호 이외의 대학원별 필요한 자격은 대학원통합 학사내규 및 신학 대학원 학사내규로 정한다.

제18조(시간제 학생) ① 시간제 등록생은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② 시간제 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편입학) ① 제3학년 편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한 하며, 자격은 대학의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최고학년에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③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제 3학년에 입학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원은 3학년 입학정원의 5%,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한다.

④ 외국인 학생으로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⑤ 대학원은 당해 학년도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서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원래의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학년한 초과 제적자나 학사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재입학은 전 재학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한다. 단, 대학은 2회에 한한다.

③ 대학원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대학원은 제적 및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대학원에는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⑥ 대학원은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과거 재적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지원절차)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할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와 다음 서류에 응시료를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신학교의 성적증명서
3. 세례사실확인서

4. 기타 필요한 서류(모집시 공고한다.)

-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전항의 1,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응시료는 과오납을 제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각 대학원별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⑥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한 전형과 필답시험, 실기시험에 의한다.

제22조(입학자 선발) ① 입학자 선발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 ② 대학의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으로서(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 등을 포함),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과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한다.

제23조(입학전형 자료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①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는 고

- 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을 활용하되 전형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편입학은 선발고사에 의하되 선발고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고 등) ①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예고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하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단위별 모집계획인원 및 모집구분별 모집방법
2. 전형대상자별 지원자격
3. 전형일정
4. 전형방법(대학별 고사 중 필답고사 또는 면접·구술고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는 출제과목, 형식, 수준 및 경향을 포함한다.)

5. 기타 대학입학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제26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과 지시한 제반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입학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27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계되는 일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만한 능력 있는 자라야 한다.

② 보증인 또는 보증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새로운 보증인의 서약서나 변경된 주소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휴학, 복학, 제적

제28조(휴학) ① 대학의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휴학한 학기를 포함하여 재학기간중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 대학원의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학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재학기간 중 6학기에 한한다.

③ 병역의무 이행, 임신, 출산, 육아, 창업,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학(단, 육아는 출산시부터 만 2세까지만 해당)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휴학기간으로 인정한다.

④ 휴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차기 이후의 휴학기에 속하는 등록금을 면제한다. 다만, 등록기간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부터 면제할 수 있다.

⑤ 대학 및 대학원은 질병휴학과 군입대휴학을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대학원의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9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소멸로서 복학한다.

②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개시전)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된다.

③ 대학원의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사내규에 따른다.

제30조(제적) ① 대학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무계출 결석 4주를 초과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재학 중 통산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학사경고 제적 후 재입학한 자로서 통산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7.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자로서 앞으로 수업해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학한 자
8. 재학 중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
9.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제1조에 기초한 본 교단의 신앙과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자
10. 대한예수교장로회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인정하는 기독교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 및 교회 등에 속하거나 이들의 교리에 동조하는 자

② 각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 징계에 의하여 퇴학 조치된 자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3.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사내규에 따른다.

제4절 전 과

제31조(전과의 시기와 방법) ① 대학의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2학년 또는 3학년 학기 초 30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일반학과에서 교육계열의 학과로 전과할 때에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절차) 대학에서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관련 학과의 승인과 이미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과목이수) 전과한 자는 해당학과의 영역별 전공소요학점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회음악과에 전과한 자는 전공필수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각 대학원 전과 및 전공의 변경) 각 대학원의 전과 및 전공변경은 석사과

정의 경우 동일 대학원 내에서 1학기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허락하지 않는다. 절차와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사내규에 따른다.

제5절 교과 및 이수

제35조(교과목 구분) 대학의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전공과목은 영역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교회음악과는 전공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학과에서는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이수한 과목 중 이수구분은 상이하 나 명칭이 동일한 과목과 대체과목의 이수구분변경은, 총장이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학점) 대학의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37조(교양과목) ① 대학의 교양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34학점(다만, 단, 교회음악과는 30학점)이상으로 한다.

② 대학의 교양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예·체능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이수할 수 있게 한다.

제38조(교직과목)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목 22학점(다만, 2008학번까지는 2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① 대학의 전공과목의 총 이수 학점은 최소한 아래의 표와 같이하되, 다전공시 전공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공명	신학	기교	영교	역교	유교	교음	아동	사복	중독
전공 이수 학점	2007학번까지	52	45	45	45	45	50	45	45	-
	2008학번	50	45	45	51	45	54	45	43	-
	2009학번	50	58	50	51	50	54	45	43	-
	2013학번	50	58	50	51	50	78	45	43	-
	2014학번부터	53	58	56	51	50	78	51	43	55

② 타 학과 전공과목 중 학과에서 전공으로 인정한 과목과 석사학위과정에서 연계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제2항 이외의 타 학과 전공과목 및 비교육(비사범)계학과 학생이 교직과목

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④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과정표에 의한다.

제40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대학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목을 둘 수 있다.

제41조(부전공) ① 대학의 부전공의 이수학점은 일반학과 21학점 이상 사범계열 학과 30학점 이상으로 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부전공을 인정하여 학위증과 학적부에 부전공과목을 표시한다.

②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다전공) ① 대학에서 다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2학년부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 제1전공의 전공학점 외에 다전공학과의 소정의 전공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을 때는 다전공이수를 인정하고, 학위증과 학적부에 이를 표시하며,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② 다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수강신청 학점) ① 대학 학생은 매학기당 17학점에서 19학점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경고자는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2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25이상인 경우

③ 조기졸업 희망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85이상인 자는 제2항의 이수학점 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이수할 수 있다.

④ 총장이 인정하는 중증 장애학생의 경우 ①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최저학점 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4조(강의시간표) 매학기의 강의시간표는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5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수강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일단 승인된 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은 소정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된 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여 성적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그 교과목 성적을 F로 한다.

④ 수강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시험) ① 대학의 시험은 매학기 말 각 교과목에 대하여 학기말 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기말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7조(성적평가) ① 대학의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과제물, 실험실습보고서, 출결사항 등을 종합하여 상대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비율과 방법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② 각 교과별로 성적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D⁰ (대학원은 C⁰) 등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등급을 낙제로 한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	4.5	95 ~ 100
A ⁰	4.0	90 ~ 94
B ⁺	3.5	85 ~ 89
B ⁰	3.0	80 ~ 84
C ⁺	2.5	75 ~ 79
C ⁰	2.0	70 ~ 74
D ⁺	1.5	65 ~ 69
D ⁰	1.0	60 ~ 64
F	0	0 ~ 59

③ 실천, 영적지도자 훈련 I, II, 교회음악과의 연주과목은 급제(P)와 낙제(F)로 한다.

④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신청학점에 평점을 곱한 합계를 총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⑤ 추가시험의 성적은 B⁺ 등급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추가시험 응시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 매학기 교과목별 출석일수가 11주에 미달하거나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F가 된다.

⑦ 각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 점	점 수
A ⁺	4.5	95 - 100
A ⁰	4.0	94 - 90
B ⁺	3.5	89 - 85
B ⁰	3.0	84 - 80
C ⁺	2.5	79 - 75
C ⁰	2.0	74 - 70
F	0.0	69 이하
P	합격	
NP	불합격	
I	Incomplete	
W	Withdraw	

제48조(학사경고) ① 대학은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80 미만인 자와 3 과목 이상 F학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사 경고하고, 통산 3회 학사경고자는 제적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에는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한다.

제49조(대학의 취득학점의 인정과 포기) ① 교과목별 성적이 Do 등급이상일 때에는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 신청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한다.

③ 폐지(2014.6.17)

④ 졸업시 성적우수시상을 위한 성적산정시에 학점포기직전의 원점수를 반영한다.

⑤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제50조(학점의 취소)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1조(수료학점의 인정 및 학년 수료) ① 대학의 학점에 의한 학년의 수료는 다음과 같다.

수료인정 학년	수료인정 학점	
	2007학번까지	2008학번부터
제1학년	35학점이상 취득시	32학점이상 취득시
제2학년	70학점이상 취득시	65학점이상 취득시
제3학년	105학점이상 취득시	97학점이상 취득시
제4학년	140학점이상 취득시	130학점이상 취득시

- ② 대학은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
- ③ 석사과정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은 24학점 이상(단, 신학대학원은 100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은 60학점(석사과정 이수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학원별로 최저학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2조(학점 이수인정) ① 재입학자는 기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며, 소정의 잔여 교육과정(다만, 사범계학과 재입학자는 신입학하여 휴학없이 정상적인 학기를 이수중인 학년의 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② 편입학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 인정하고 해당학과의 잔여 교육과정(즉, 신입학하여 휴학 없이 정상적인 학기를 이수중인 편입학한 학년의 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과목별 이수인정 평점은 학생의 수강 과목별 출석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이상(신학대학원은 5분의 4이상)이고 과목당 성적평점이 2.0(C⁰등급)이상이 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학원의 필요에 따라 내규로 정한다.

④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는 필요한 이수과목의 총평점 평균이 3.0(B⁰등급)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신학대학원은 예외로 한다.

⑤ 대학원 편입생이 원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53조(타전공 및 타대학 학점인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재학 중 국내·외 타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중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군복무로 휴학중인 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원격수업을 수강신청하고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인정학점은 총 이수학점의 1/4 범위 내로 하되 특히 제1항 3호에 의한 인정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 및 연간 6학점 이내로 하며, 세부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 1항의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인정기관의 성적표 또는 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를 첨부한 본 대학 소정의 학점인정신청서에 해당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속대학원 타전공 또는 본교 타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신학대학원은 예외로 한다.

제6절 졸업과 수료, 자격시험 및 학위

제54조(졸업연주) 교회음악과 학생은 졸업학기의 소정기일까지 졸업연주 계획을 공고한 후 졸업연주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① 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단, 2007학번까지는 140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4년(8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소정의 전공 및 교양과목을 이수한 자
3. 사범계열 학생으로서 소정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
4. 실천(채플)과목 8학과 영적지도자훈련 I, II를 Pass한 자
5. 40시간(3학년 편입생은 2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를 마친 자. 단, 사범계학과 2009학번부터 교육봉사활동 이수자의 이수시간은 사회봉사 이수시간으로 중복인정할 수 있다.
6. 컴퓨터 관련 과목을 4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전산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컴퓨터 관련과목 및 전산관련 국가자격증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7.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위 1~6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졸업신청원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자와 편입학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8. 졸업인증제 시험에 합격(Pass)하여야 한다.
9. 위의 제2항 5호, 6호, 8호의 해당졸업요건 및 졸업인증은 각 학과 교수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별로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할 수 있으며 졸업해당학기 성적 정정 기간(계절학기 제외)까지 이수하거나 해당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6조(졸업과 학위) ① 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학년의 성적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에게는 별지서식1의 학위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며, 학사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 학 과	문학사(전공명)	유아교육과	문학사(전공명)
기독교교육과	문학사(전공명)	교회음악과	음악학사(전공명)
영어교육과	문학사(전공명)	아동학과	문학사(전공명)
역사교육과	문학사(전공명)	사회복지학과	문학사(전공명)
중독재활상담학과	문학사(전공명)		

- ②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 ③ 대학원은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 ④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기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별지서식 2> 일반대학원 학위기
 - <별지서식 3> 특수대학원 학위기
 - <별지서식 4> 전문대학원 학위기
- ⑤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⑥ 대학원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거나 논문을 표절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은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⑦ 대학원은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7조(조기졸업) ① 6학기 또는 7학기에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성적 평점평균이 3.85이상인 자는 조기졸업할 수 있다.

- ②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는 졸업해당 학기 초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대학원 자격시험 종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만, 신학대학원은 학사내규로 정한다.

제59조(대학원 자격시험 응시) ①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학사내규에 따른다.

제60조(수료시기) 대학원 과정의 수료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4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1절 학생지도

제61조(학생회(원우회)의 설치)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는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대학에는 학생회를, 대학원에는 원우회를 두며,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회칙으로 정한다.

② 학생회(원우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학생지도위원회 구성과 기능) ① 학생회 활동의 지도육성 및 학생회 운영 전반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또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대학원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심의한다.

③ 총장은 매학년 초에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평생담임교수(지도교수)에게 학생지도를 담당시키며, 평생담임교수(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단체조직) 학생회(원우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학생활동의 제한) ① 학생은 본 대학 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貼付) 또는 배부
3. 교외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65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징계처분) ①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한 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한다.

②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③ 학칙과 기타 교내 제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여 그 본분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되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제적처분을 한다.

④ 대학원에서는 학생의 본분과 학칙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67조(외국인 및 장애학생) ① 외국인 학생에게 최대한의 학습편의 및 복지를 지원한다.

②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한다.

제2절 장학 및 포상

제68조(지급대상) 본 대학에 장학제도를 두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된 학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69조(장학금 종류) 장학금에는 납입금 감면과 교회나 기타 단체 또는 독지가 기탁금에 의한 장학금 등이 있다.

제70조(장학위원회) ① 납입금 감면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장학금 지급 중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휴학, 제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2조(장학금 지급 절차)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각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3조(대학원 장학금) 대학원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학원 “장학금 운영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74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품행이 타에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등 록

제75조(등록금) ① 대학의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정상학기를 초과한 학기(이하 초과학기)부터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제 55조 ②항 5호, 6호, 8호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졸업요건 또는 졸업인증을 미 이수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가 초과학기에 별도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학기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입금의 납부 기한은 매학기 총장이 정한다.

제76조(결석, 정학, 제적자의 납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 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다만, 정학기간이 정학시점의 해당학기 종료 후 신학기까지 이어질 경우에 한하여 신학기부터 정학기간의 종료기간까지는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77조(납입금의 반환) 일단 납입된 금액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다만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78조(시간제 등록생의 등록 및 기타) ① 시간제 등록생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등록 및 운영된다.

1. 시간제 등록생의 납입금 책정 등은 따로 정한다.
2.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학점의 1/2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79조(대학원의 등록) ① 각 대학원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학점등록, 논문등록 등으로 구분한다.

- ② 대학원 학생은 각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대학원은 수업연한 이내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없다.
- ④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을 정규등록하고 이수하여야 할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은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수업, 공개강좌, 교육과정

제80조(수업) 학생의 수업은 주간, 야간, 계절, 방송통신 등에 의한 가상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81조(가상수업) ① 방송·통신·인터넷등에 의한 가상수업을 할 수 있다.

- ② 가상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공개강좌목적) 본 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교육, 과학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83조(대학원의 공개강좌설치) ① 대학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개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④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4조(대학원의 최고위과정운영) 대학원은 공개강좌의 일환으로 각 과정별 최고 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85조(계절수업)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제86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본교와 외국대학간 협약체결에 따라 양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인정하여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공동학위과정 및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7조(학.석사 연계과정)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학점은행제

제88조(근거규정 및 적용의 제한) 본장의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동 법률시행령에 따라 본교가 시행하는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9조(학습기간) 학점은행제는 통상15주와 8주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관리지침에 따른다.

제90조(학위취득조건) ①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이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② (일반학사 학위)총신대학교에서 다음의 학점을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졸업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과	이수학점	비고
신학과	105학점	
비신학과	84~105학점	사회복지과, 아동학과, 교회음악과

③ (타전공학사 학위)기존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본 학점은행에서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총장명의로 타전공 학사 학위를 원칙적으로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시행여부 및 시기는 사회교육대학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④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총장학위를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재학 중 품행이 불량한 자
2. 본 대학의 신학적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자
3. 본 대학의 신학적 입장과 다른 신학적 사상을 선전하는 자
4. 이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이 졸업학점에 포함되는 경우
5. 기타사유로 인해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총장학위를 수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장 산업교육학부(계약학과)의 설치.운영

제91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산업교육학부 교육과정은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으로 하고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주문식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하여 교육내용을 정한다.

제92조(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산업교육학부의 교육대상자는 산업체에서 추천한다.

② 대학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할 허가한다.

③ 그 밖에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3조(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 ① 산업교육학부 운영 등에 필요한 총 경비는 산업체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산업교육학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대학과 산업체 그리고 학생이 각각 나누어 부담한다.

③ 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 납부액은 산업교육학부 운영에 필요한 총 경비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산업체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액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94조(재학연한, 수업일수 및 수업방법) ① 산업교육학부 재학연한은 신입학생은 6년, 편입학생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야간, 주말, 주중 등 산업체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학급편성을 할 수 있다.

④ 수업방법은 출석수업, 현장수업, 원격수업 등 당해학기 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근무경력을 현장실습 교육과정으로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 제95조(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① 산업교육학부의 설치·운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 변경에 관한 특별 통고가 없을 때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 ② 산업교육학부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지되는 경우라도 재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적되지 아니하고 본인이 원하는 유사학과에 전과된다.
- ③ 입학 후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하되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재학생이 부득이하게 퇴직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재학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대학평가

- 제96조(평가) ① 대학의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교수회 및 위원회

제1절 대학평의원회

- 제97조(설치 및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3에서 5호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

한다.

제2절 교수회

제98조(구성과 소집) ① 본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다만, 총장 또는 교수회의 요구에 따라 기타 관계된 자를 교수회에 참석케 할 수 있다.

-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를 두고, 각 캠퍼스별로 교수회를 둔다.
- ③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총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④ 교수회는 정기 교수회와 임시 교수회로 구분한다.
- ⑤ 교수회에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케 한다.

제99조(의결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장, 연구년, 휴직중인 교수는 재적교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항을 심의 한다.

- ①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③ 입학, 수료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 ④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
- ⑤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⑥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 ⑦ ①~⑥항의 심의 결정권은 캠퍼스별 교수회가 갖고, 학기별로 전체 정기교수회에 중요한 사항을 보고한다.
- ⑧ ①~⑥항에 관련된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캠퍼스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 설치와 폐지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절 교무위원회

제101조(목적) 본 대학교의 학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각 캠퍼스별로 교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장이 그 위

원장이 된다.

제103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 ① 학칙 및 학사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대학의 학과(전공) 설치와 폐지
- ③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④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 ⑤ 학과, 대학원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 ⑥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⑦ 연구비, 장학금 등 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⑧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⑨ 교내 행사에 관한 사항
- ⑩ 교원 연구논문 및 학술 연구에 관한 사항

제4절 대학원위원회

제104조(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의 학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각 대학원에 위원회를 두어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 ③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부총장과 각 대학원장을 포함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기능 및 조직은 내규로 정한다.

제105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6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② 학과 및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④ 학생지도,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 ⑤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⑥ 공개강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대학원 학사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절 기타위원회

제107조(기획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총장의 자문기구로서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단기 발전 계획
2. 학사행정의 기구 조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운영에 관한 심사 분석 및 평가 홍보
4. 인력과 물자 및 시설에 관한 기본 운영계획
5. 기타 본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8조(교육과정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 및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제정, 개편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④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육과정위원회의 간사는 교무과장이 된다.

제109조(교원인사위원회) ① 본 대학교 부총장, 대학원장 등의 보직 동의 및 전임교원의 임용 동의, 기타 대학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1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겸임교수 등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⑥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교원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과장이 된다.

제110조(기타 위원회) ① 제10장이 정한 위원회 이외에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0조의1(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등록금 책정 및 예.결산 심의를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따르되, 총신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하도록 한다.

제11장 학칙의 개정

제111조(개정절차)

- ① 각 부서장은 학사운영상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기획과로 제출한다.
- ② 기획과는 법률자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시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고한다.
- ③ 총장은 학칙개정안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각 부서장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2조(심의 및 공포)

- ①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의 순서로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다만, 100조 ①~⑥항에 관련된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캠퍼스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과(전공) 설치와 폐지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총장은 개정된 학칙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학칙의 수정은 전 교수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제3조 본 학칙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 (시행일) 제54조의 개정학칙은 197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제55조의 개정학칙은 197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7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① 본 개정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학칙 제3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는 1981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학칙에 의하되 졸업 이수 학점 및 성적처리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본 개정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개정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① 본 개정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학칙 제3조, 제11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는 1988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학칙에 의한다.

제13조 ① 본 개정학칙은 198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3조, 제11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 학칙에 의한다.

제14조 (시행일) 본 변경학칙은 198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① 본 변경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1조, 제43조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 본 변경학칙은 199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본 변경학칙은 199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본 변경학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본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는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구 학칙에 의한다.

제20조 본 변경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0조의 개편된 교육과정 적용은 교회음악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휴학 등 학적 변동으로 1998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1학년, 2학년에 복학생도 적용된다.

③ (경과조치) 제38조 규정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제52조 규정은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2조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5조 제54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1]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2조 제42조의 개정된 규정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38조 1항의 단서 조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기독교교육과」는 2004년 3월 1일 현재 종교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1~4학년생) 및 휴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6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6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3조 ②-8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2조 1항, 제34조 1항, 제36조 1항, 제48조, 제53조 1항의 개정된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3조 1항의 개정된 규정 단서에 의거하여 2009학년도 2학기 복학생부터는 졸업인증만을 미이수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 한하여, 복학학기에 별도의 학점을 수강신청하지 않는 동시에 본인의 요청이 있다면 기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40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45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7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8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통합대학원 학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2.(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각 대학원 학칙은 폐지한다.

부 칙(통합대학원 학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목회신학전문대학원의 변경학위는 2006년 1월 26일 현재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통합대학원 학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 2.(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신입생모집부터 시행한다.

부 칙(통합대학원 학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통합대학원 학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통합대학원 학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9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통합대학원 학칙)

- 1.(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7월 25일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학칙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에 따라 통합대학원 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과 전조의 폐지 학칙이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이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나 행위가 발생할 때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 중 이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정에서 인용된 종전의 학칙조항은 이 학칙으로 갈음한다.

제5조 1970년 3월 1일 시행부칙 제 2조는 삭제한다.

부 칙(2014년 3월 1일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3월 12일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된 43조④항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6월 17일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49조3항 폐지 및 5항 개정과 관련하여 2014학년도 1학기, 2학기는 성적정정기간에 개정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대상-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

부 칙(2015년 5월 7일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39조 1항은 2015학년 1학기부터 시행하며 제 55조 2항 6호의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년 5월 22일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23조 개정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11월 16일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학입학정원

모집계열		모집학과	입학정원	캠퍼스구분
인문 계열	인문계학과	신학과	90	서울캠퍼스
		아동학과	20	
사회복지학과		40		
중독재활상담학과		10		
사범계학과	기독교교육과	30	서울캠퍼스	
	영어교육과	30		
	역사교육과	30		
	유아교육과	50		
예능계열		교회음악과	60	서울캠퍼스
총 계			360	

[별표2] 산업교육학부 입학정원

구분	계열	과정	학과	입학정원	학위구분	캠퍼스
대학	인문 사회	학사	유아보육학과	산업교육학부 입학정원은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모집된 당해연도 입학인원으로 한다.	문학학사(B.A.)	서울캠퍼스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다문화한국어학과		문학학사(B.A.)	
일반 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MA)			
			교육학석사 (MEd)			
			상담학석사 (M.A.C.)			
교육 대학원			상담학과			

[별표3] 대학원 입학정원

대학원	과정	계열	학과	학위수여종별	입학 정원	캠퍼스구분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신학과	신학석사(Th.M.)	80	서울캠퍼스
			기독교교육학과	문학석사(M.A.)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M.A.)		
	예능	교회음악학과	음악학석사(M.M.)			
박사	인문사회	신학과	철학박사(Ph.D.)	25		
신학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Div.)	393	양지캠퍼스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	교육학과	교육학석사(M.Ed.)	47(32)	서울캠퍼스
선교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선교학과	선교학석사(Th.M./M.A.)	40	서울캠퍼스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목회학과	목회신학석사(Th.M.)	12	서울캠퍼스
	박사	인문사회	목회학과	목회신학박사(Th.D.)	15	서울캠퍼스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M.S.W.)	15	서울캠퍼스
상담대학원	석사	인문사회	성경적상담학	상담학석사(M.A.C.)	30	서울캠퍼스
교회음악 대학원	석사	예체능	교회음악과	교회음악석사(M.C.M.)	20	서울캠퍼스
합 계					677	

* 교육대학원(32)는 교원자격증 부여 입학정원임.

<별지서식 1>

제 호
학 위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아래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학사) 부전공
년 월 일
총 신 대 학 교 총 장 학 위 0 0 0 (인)
학위번호 총신대 (학) _____

<별지서식 2>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신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총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0 0 0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0 0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총신대학교 총 장 학위 0 0 0 (인)
학위등록번호 총신대 (석) _____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철학박사(Ph.D.)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총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총신대학교 총 장 학위 ○ ○ ○ (인)

학위등록번호 총신대____(박)_____

<별지서식 3>

명박 제 호

학 위 기

국 적

성 명

년 월 일생

이 이는 ○○○○○○ ○○○○○○ ○○○○○○ ○○○○○○○○○○○○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명예 ○○박사학위 수여를 인정함.

년 월 일

총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총신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교육과학기술부 학위등록번호 _____

(교육대학원)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전 공 :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교육학석사(M.Ed.)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박사) 〇 〇 〇		
위의 증명에 의하여 교육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총 신 대 학 교 총 장 (박사) 〇 〇 〇		
학위등록번호 총신대____(석)_____		

(신학, 선교, 기독교사회복지, 상담대학원)

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이 사람은 본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목회학석사(Master of Divinity)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박사) 〇 〇 〇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총신대학교 총 장 (박사) 〇 〇 〇		
학위번호: 총신대 ____ (석) ____ 호		

제 호

졸업증서
제 회

성 명: _____
 생년월일: 년 월 일

이 사람은 본 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졸업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박사) ○ ○ ○
 총신대학교 총 장 (박사) ○ ○ ○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장 ○ ○ ○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_____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OO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OO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총신대학교 OO대학원장 (박사)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OO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총신대학교 총 장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총신대____(석)_____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년 월 일생

본 대학교 OO대학원 OO석사()과정에서 소정의 이수를
필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총신대학교 OO대학원장 (박사) ○ ○ ○

총신대학교 총 장 (박사) ○ ○ ○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신학석사(Th.M.in전공표기/한글명 전공표기)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총신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신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총신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등록번호 총신대 (석) _____

<별지서식 4>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신학박사(Th.D.in전공표기/한글명 전공표기)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총신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총신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등록번호 총신대 _____ (박) _____